

[별지 제58호] <개정 2005.6.15, 2011.1.19>

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			
주 소			주민등록번호
성 명	(한자)		
소 속	근 무 기 간	직 위 · 직 급	담 당 업 무
	년 월 일 ~ 년 월 일		()
	년 월 일 ~ 년 월 일		()
	년 월 일 ~ 년 월 일		()
	년 월 일 ~ 년 월 일		()
(주) 1. 소속란은 근무하였던 부·팀·과·계 등을 명시할 것. 2. 실제 해당 손해사정사 구분별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시기와 종기를 구분하여 연월일까지 기재하고, 손해사정사 구분[재물, 차량, 신체]을 반드시 기재할 것 3. 담당업무란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.			
상기인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-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소속기관 금융감독원장 귀하			

190mm×268mm(인쇄용지 2급 60g/m²)